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(안)
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22일

강 릉 시

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, 수질오염의 방지, 수산자원의 보호 등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(이하 "낚시어선업자"이라 한다)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의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영업시간)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 이라 한다)의 영업시간은 **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**로 한다. 다만,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**동절기(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)는 09:00부터 16:00까** 지로 하며, 하절기(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)는 07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- 제4조(영업구역)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. 단,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연안 3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.
- 제5조(안전운항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어촌·어항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서는 낚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2.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갯바위, 간출암,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키는 행위를 금한다.
- 3.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어 선업자(선원 포함) 및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4. 충돌,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의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5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정확한 '승선자 명부'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- 6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 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 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.
- 7. 낚시어선업자(선원)는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, 유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2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.
 - 3. 선장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.
 - 4. 수산물의 불법 포획·채취 행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한다.
 - 5. 해상에 유류, 분뇨,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.
 - 6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 - 7. 승객은 출항 시부터 안전하게 입항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 - 8. 낚시어선(선상)에서 승객의 음주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금한다.
 - 9.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

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**제6조**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에 제5조 제2항에 의한 승객의 준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,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시켜야 한다.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·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 시장·군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 고시 제2016-130호 (2016.5.26.)는 이를 폐지한다.